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94
----------	----

제출년월일 : '99.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운영과 위탁운영의 근거를 정함(안 제4조, 제5조)
- 나.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다. 사용 및 허가, 제한, 취소 등 절차 규정(안 제8조, 제9조, 제10조)
- 라. 사용시간 및 사용료징수 및 특례, 감면, 반환 등 절차 규정(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마. 사용자의 설비 및 변상책임, 양도금지 등 근거를 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바. 입장의 점인 및 제한 규정(안 제17조, 제18조)

붙임 : 1. 관계법령 : 별첨

2. 입법예고기간('99. 6. 23 ~ 7. 14)중 의견없음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평창군 종합문화예술회관은 평창읍 중부리 산 66 - 6번지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야외무대, 회의실, 향토자료실, 전시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 한한다), 영화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다만, 단순한 취재행위는 제외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군수는 회관의 시설 및 설비 등을 운영 관리한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관의 운영·관리 및 사업의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 할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 문서로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위탁관리)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 받은 자는(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하게 운영·관리하여야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

②군수는 회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③수탁자의 제반의 운영·관리는 본 조례에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작성) 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작성하여야 한다.

1. 군민 정신교육사업
2. 문화·예술진흥 사업
3. 정서함양사업
4. 복지후생사업
5. 기타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문위원회) ①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 및 사용허가) ①군수는 회관의 자체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여할 수 있다.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회관의 유지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5. 제8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때

제11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며 사용시간을 일부만 이용한 때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기 준	사 용 시 간	비 고
오 전	08:00 ~ 12:00	다만, 전시설의 사용은 1일 기준으로 한다.
오 후	13:00 ~ 17:00	
야 간	18:00 ~ 22:00	

②회관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는 납입 고지서에 의하여 수납한다.

제12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홍행성이 있는 오락성 관람물(영화, 쇼 등)의 공연을 위한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및 문예진흥기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 수입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사용료를 징수한다.

②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때
3.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
4.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자의 설비) ①회관 사용 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설비는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7조(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 ①입장권의 발행은 사용자 부담으로 하되,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미 검인 입장권은 무효로 한다.

②입장권의 판매 및 회수는 회관의 관리책임자가 담당하되, 예매는 위탁할 수 있다.

③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입장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매는 수수료는 예매 액의 1할의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2. 만취자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자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창군종합문화예술회관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명	단위	사용료	비 고
공 연 장	오전	50,000	1. 1회 단가임 2.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오후	70,000	
	야간	100,000	3. 익일의 공연 및 행사준비를 위한 (철야 포함) 작업시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전 시 실	1일	20,000	1일(09:00 ~21:00)
소공연장	1회	30,000	토요일의 오후와 야간 및 공휴일의 공연에 대하여는 기준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함
야외무대	1회	30,000	

관계법령발췌

가. 지방자치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 또는 위탁할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7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